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다230690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1. 배재흠

2. 이상훈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조지훈, 오세범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와우리, 수원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최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승철, 정용재, 박영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625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